

산림육장등 [] 조성계획
[]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(기관명)	전화번호	
산림 소재지		구역면적	ha
산림육장등의 명칭			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육장등 [] 조성계획 []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육장등조성계획서(산림육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시설물(도로를 포함합니다)의 종류·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. 시설물종함배치도(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) 다.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. 산림육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. 산림경영계획 바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(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육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승인받은 산림육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